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곽규택 · 조승환 · 박지원
김용태 · 유상범 · 신성범
김상훈 · 강대식 · 강승규
배준영 · 조지연 · 강명구
서천호 · 최은석 · 서범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,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, 비용의 우선 보조,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,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,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12조·제36조 및

제52조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
(이하 “인구감소지역”이라 한다)

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단 중 “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”을 “인구감소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.

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농어촌지역”을 각각 “농어촌지역·인구감소지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1. 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~ ④ (생략)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직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	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3. (현행과 같음) 4. 「<u>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(이하 “<u>인구감소지역</u>”이라 한다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과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52조(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
등의 어린이집) ① 특별자치시
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
수·구청장은 도서·벽지·농
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
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
집의 설치기준, 제17조제5항에

인구

감소지역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.

제52조(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
등의 어린이집) ① -----

-----농어촌지역·인
구감소지역-----

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도서·벽지·<u>농어촌지역</u> 등의 구체적인 범위,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농어촌지역·인구감소지역</u>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